

제 15 장 행정 및 최종규정

제 15.1 조 의무와 약속의 이행

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이 협정상의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보장한다.

제 15.2 조 공동위원회와 검토

1. 이 협정의 다른 곳에서 규정된 협의에 추가하여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부장관 또는 그들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.

2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,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 혹은 상호간에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때에 회합한다.

3.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다.

가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임무를 포함하여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적용을 검토하는 것

나. 임시 또는 상설 위원회·실무작업반 혹은 그 밖의 기관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위임하는 것

1) 특정 사안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

2) 이 협정의 어떠한 부분의 이행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연구하고 양 당사국의 통상교섭 담당 장관에게 이를 권고하는 것, 또는

3)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이 협정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양허 또는 쟁점을 검토하는 것

다.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(이러한 개정은 제15.5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.), 그리고

라.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하는 것

제 15.3 조

접촉선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부장관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.
2. 이 조의 목적상, 양 당사국의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대한민국에 대해서는, 외교통상부 자유무역정책국 또는 그 승계기관,
그리고
 - 나. 인도에 대해서는, 상공부 동북아시아과 또는 그 승계기관
3. 이 협정의 목적상, 양 당사국간 모든 의사소통 또는 통보는 접촉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.

제 15.4 조

부속서 및 부록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 15.5 조

개 정

1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정 또는 추가에 합의할 수 있다.
2. 이 협정의 수정 또는 추가가 합의된 때에는, 제1항에 따른 수정 또는 추가는 양 당사국이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한 날에 발효되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 15.6 조
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

이 협정에 통합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될 시, 양 당사국은 제 15.5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에 상호 협의한다.

제 15.7 조
발 효

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.

제 15.8 조
종 료

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통보일부터 6개월 후에 이 협정은 종료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한국어,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. 모두 동등한 정본이나, 불확실 또는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